

『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[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]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22일

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윤동욱

나. 제안이유

-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구미 푸드플랜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, 법인이 사용할 사무실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감면 개요

- (1) 위 치 :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-2
- (2)대 상 : 선산출장소 3층 사무실(71.4m²)
- (3)사용주체 : 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
- (4)감면기간 : 2021. 9. 16. ~ 2024. 9. 15.(3년)
- (5)사용면적 : 71.4m²

나. 감면 필요성

- (1) 구미시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고, 생산·가공·유통·체험·관광 등 지역생산-지역소비 추진을 통해 푸드플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- (2) 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구미시의 출연기관으로 관련법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의거 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며, 구미시 푸드플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미시의 지원이 필요

다. 사업 내용

○ 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개요

- (1) 설립형태 : 비영리 재단법인(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출연기관)
- (2) 설립목적 : 구미시 푸드플랜 실행 중간지원 조직
- (3) 출연규모 : 3억원(기본재산 1억원, 운영재산 2억원) ※ 21년도 편성 출연금
- (4) 사 무 소 :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-2(선산출장소 3층)

(5) 주요사업 : 농가조직화, 유통경로 다각화,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등
지역 먹거리 사업 총괄적 실행조직 역할 수행

○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9. 12. 30. : 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
- 2020. 6. 30. : 경상북도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
- 2021. 4. 29. : 재단법인 발기인총회
- 2021. 6. 21. :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 설립허가
- 2021. 7. : 재단법인 설립 등기
- 2021. 8. : 재단법인 직원(경력직) 채용
- 2021. 10. 5. : 직원 임용 및 근무개시
- 2021. 10월중 : 출범식 개최예정
- 2021. 10월말 : 농가조직화 구축 및 직매장 1호점 개장준비

○ 기대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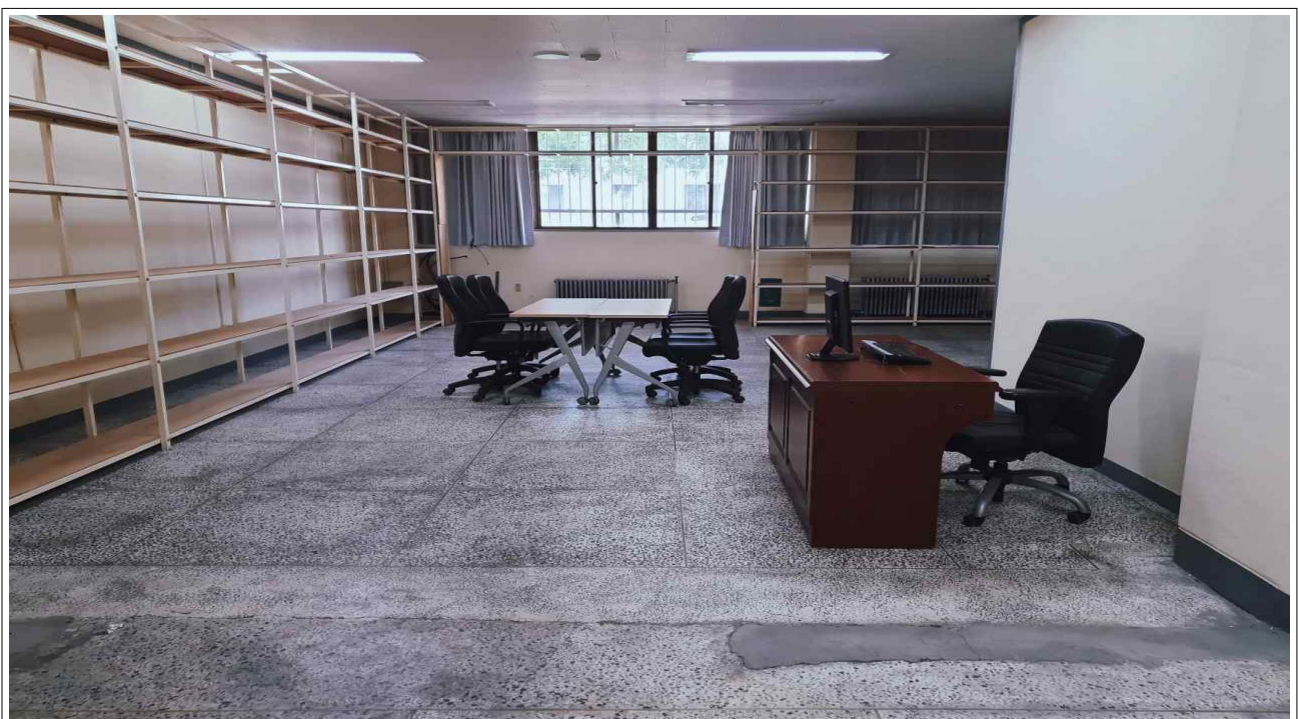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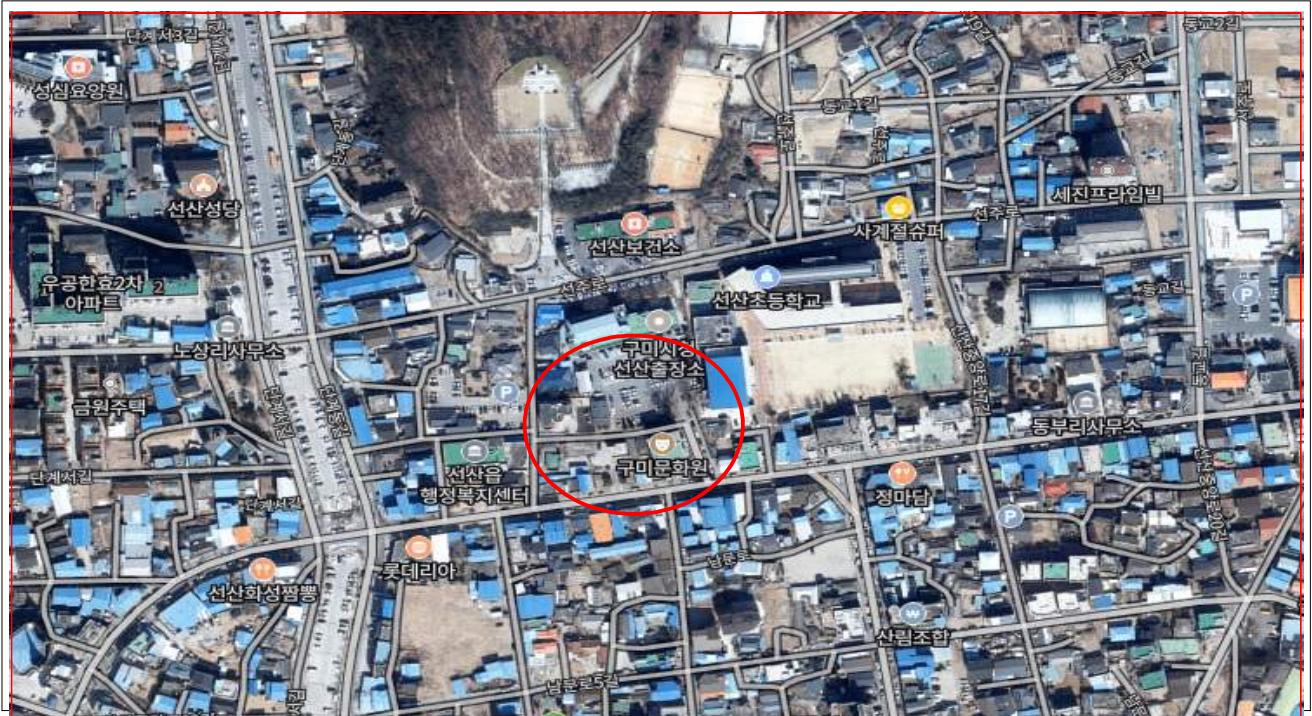
- (1) 구미시 푸드플랜 수립에 따른 추진 기반 및 동력확보
- (2) 유통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
- (3)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형성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
주민 복리 증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1항 4호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, 제17조 5항 2의2호



5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○ 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[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] 은

- 구미 푸드플랜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사용할 사무실의 공유재산 사용료(연간 354만원)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,
- 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우리시의 푸드플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7. 토 론 요 지 : 생 략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